
감항분야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 대응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22. 3.

항 공 정 책 실
항 공 기 술 과

||| 목 차 |||

I. 과업개요	1
II. 과업 주요내용	2
III. 과업 수행지침	2
IV. 보고 및 성과품 제출	4
V. 보안 대책	5
VI. 예정공정표	7

I 과업 개요

□ 과업명 : 감항분야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 대응 방안 연구용역

□ 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

□ 예산 : 금 50,000,000원(부가세포함)

□ 추진배경

- ICAO는 전 체약국을 대상으로 항공안전관리체계를 평가('98~), 평가결과는 국제항공안전 신인도 및 항공산업 국제경쟁력에 영향
- 우리나라는 '23년(SSPIA+중점평가) 또는 '24년(상시평가) 수검이 유력함에 따라 ICAO기준 대비 국내 이행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필요

【 ICAO 평가 체계 】

평가 구분	내 용
SSPIA*	국가안전프로그램 이행수준을 8개 분야** 80개 항목으로 평가
상시평가	ICAO가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를 8개 분야, 790개 항목으로 평가
중점평가	상시평가 평가항목 790개 중 핵심 항목 212개 평가

* State Safety Programme Implementation Assessment(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이행평가)

** 법령, 조직, 자격, 운항, 감항, 사고조사, 항행, 비행장

- 특히, 최근 ICAO가 항공안전상시평가 세부평가항목(PQ*)을 개정('21.6 적용)하고, ICAO 국제표준(SARPs)에 부속서 16(환경보호)가 추가됨에 따라,

* PQ(프로토콜) : ICAO가 체약국의 국제기준 이행률을 객관적·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표준화된 평가항목으로 안전평가의 핵심 요소

【 감항분야 ICAO 국제표준 및 세부평가항목 등 】

ICAO 국제표준(SARPs)					ICAO 세부평가항목	ICAO SSPIA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 이행평가)
부속서7	부속서8	부속서16				
		제1권	제2권	제3권		
52개	1,199개	263개	96개	40개	186개	11개
1,650개					186개	11개

- 감항분야 ICAO 국제표준과 국내규정간 차이점 등을 비교·분석(CC)하여 차이점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국내규정 개정 등)을 마련하고,
- 감항분야 평가질의서(PQ)에 대해 ICAO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평가자료(답변서 및 증빙자료) 준비 필요

II 과업 주요내용

1. 부속서 7, 8, 16 등 감항분야 국제기준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

가. 최근까지 부속서 7, 8, 16 개정사항 조사·분석

나. 부속서 7, 8, 16 개정 이행 관련 해외사례 조사·분석

2. 감항분야 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방안 마련 제시

가. 국제기준과 국내규정간 차이점 등 비교·분석(CC)

나. 국제기준과 국내규정간 차이점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다. 세부평가항목(PQ)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이행평가(SSPIA) 분석, 우리 측 답변서(국문/영문) 및 증빙자료 제시

III 과업 수행지침

□ 일반사항

- 이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 참여연구진은 발주자의 예산설계서 또는 과업수행자의 당초 연구 계획(안)에 따라 그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경험·지식·능력을 가진 자를 발주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자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연구진 일부를 교체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과업수행자가 스스로 참여 연구진을 교체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통계자료 및 장래 지표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여건 변동 등으로 발주자가 과업 내용에 추가·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과업 수행에 포함하여야 한다.
- 연구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 과실에 의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인력현황,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용역비의 관리, 사용

-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당초 예산설계내용, 예산 집행지침 등에 맞추어 집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인건비 등 예산 설계 내용을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운영예산의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보안사항

- 이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되, 발주처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과업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IV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보고

-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계
 - 과업책임자의 선임계, 사용인감계 및 이력서
 - 분야별 과업참여자 명단(담당업무 및 이력서 포함)
 - 예정공정표

- 인력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및 보안관리대책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 (중간보고) 과업수행자는 용역 중간경과를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최종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14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준공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척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 제출 성과품

구 분	형 태	기 준	제출시기	제출부수
착수보고서	파일(hwp 또는 ppt)	A4 10면 내외	계약 후 14일 내	5부
중간보고서	파일(hwp 또는 ppt)	A4 50면 내외	계약 후 3개월 내	- 5부
최종보고서	파일(hwp) 책자(A4)	제한없음	준공시	- 5부
보고회 발표자료	파일(pdf)	-	준공시	-

V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대표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외국인포함)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한 보안사항의 누설과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하에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종사자 이외의 자는 이 과업 중에 작성하는 성과물 등을 취급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에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이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이 과업의 수행 장소는 여타 작업 장소와 구분하고 참여자 이외의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비밀·대외비 등을 생산할 경우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하며, 회의자료 등은 필요 부수 이외 발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는 이 과업관련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점검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VI

예정공정표

구 분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5월차				비중 (%)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최근까지 부속서 7,8,16 개정사항 분석	■	■																			10.0
2. 부속서 7,8,16 이행 관련 해외 사례 분석			■	■																	10.0
3. 감항분야 국내규정 vs. 국제기준 차이점 분석(CC)					■	■	■	■	■	■											20.0
4. 국내규정 vs. 국제기준 차이점 해소방안 제시									■	■	■	■	■								20.0
5. 세부평가항목(PQ) 분석 및 답변·증빙자료 제시													■	■	■	■	■				25.0
6.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이행평가(SSPIA) 분석 및 답변·증빙자료 제시																	■	■	■		15.0